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공단의 신설 등 〉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88호)

2025. 11.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단서 조항 삭제 등	3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공 단의 신설 등	10
3. 공단 계약형 퇴직연금 가입범위 확대	28
4. 부칙	31

I. 제안경위

2025년 9월 23일 한창민위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현행 확정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에게 이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체계로 인해 투자 위험 대비 낮은 수익률, 수익자인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친절한 공시와 정보 제공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단체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자 궁극적인 수익자가 주도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상품 공급자인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지배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이에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단서 삭제).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퇴직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5 신설).

바.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의6 신설).

사. 퇴직연금공단의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퇴직급여제도 설정 제외 단서 조항 삭제 등(안 제4조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이에 따라 안 제8조 단서 신설, 안 15조 단서 신설을 통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및 급여가 계산될 수 있도록 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 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 ----- ----- . <단서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3) -----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을-----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

----- . 단
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
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급여수준) -----

--. 다만,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DB, DC, IRP, 중퇴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단기간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¹⁾ 1년 이상의 계속근로는 1961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마련된 이래 계속해서 퇴직급여 지급의 요건이 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퇴직급여 채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퇴직금, DB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IRP형 퇴직연금제도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²⁾

1)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 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상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와는 형평성을 위해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³⁾

그러나 현행법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와 관련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의 규정은 엄격한 규정으로, 근속기간 규정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⁴⁾

이에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를 배제하는 현행법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임.

개정안과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할 경우, ①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수급권을 창설하여 이들의 노후 생계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② 근로제공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⁵⁾를 단기간근로자에게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의 차별적

3)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매일노동뉴스, “단시간 근로자·노무제공자도 퇴직연금 받아야”, 어고은기자, 2025.6.2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681>

5)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대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③ 일자리 쪼개기⁶⁾ 등과 같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잠탈을 위한 편법적 행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헌법재판소는 ①퇴직급여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②퇴직급여제도 이외에도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퇴직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타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기간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배제에 대해 합헌결정한바 있다는 것⁷⁾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근로기간 조건을 삭제하여 퇴직급여제도 설정 범위

6)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는 사례를 의미함.

7)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후불임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나아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어느 사용자 밑에서 계속하여 장기간 근무한 공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액 산정방법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으로 퇴직급여도 많아지게 설계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와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다.…즉, 퇴직 후의 생활보장 내지 노후보장은 반드시 퇴직급여제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는 이를 위하여 공적 보험이나 기타 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적 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사용자로 하여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를 확대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퇴직급여제도 설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및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법 제5조⁸⁾는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설정이 의무화된다면, 신설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맞추어 유예기간의 단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법 제12조⁹⁾는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8)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9)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와 제8조 및 제15조를 고려할 때 법 제12조제3항에 대하여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대한 퇴직금 및 급여 계산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법 제12조제4항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 DC, IRP) 중 DC 부담금, 중퇴기금 부담금 및 IRP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이때 안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DB 외 DC, IRP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 대한 부담금 계산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시 영세사업주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¹¹⁾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등 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바 퇴직급여 적용 확대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급여의 단계적 적용 등 부담경감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참고로, 단기간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관련한 타 개정안에는 안 제12조에 대한 보완 규정이 있음(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2694호 등)

11) 고용노동부는 연간 임금총액의 최대 약 8.3%에 대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퇴직연금 공단의 신설 등(안 제4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의 운영방법을 계약형(안 제4조의2제1호)과 기금형(퇴직연금공단과의 신탁설정계약, 안 제4조의2제2호)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계약형 또는 기금형 중 선택하여 DC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DC형(계약형)과 관련된 조문들을 정비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공단의 업무, 퇴직연금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공단에 대한 감독 등 상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그 운영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

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자산 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하 “계약형”이라 한다)

2.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하는 방법(이하 “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방법을 정한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퇴직
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의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공단을 말한다)-----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2장의2 퇴직연금공단

제12조의2(퇴직연금공단의 설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3(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퇴직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3. 퇴직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퇴직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신 설>

<신 설>

사항

제12조의4(퇴직연금기금의 설치 및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
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20조에 따른 부담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
여금

제12조의5(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
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2조의6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
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6에 따

<신 설>

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6(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고용노동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관계 전문가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2조의7(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
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12조의8(공단에 대한 감독) ① 공
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 계
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2
개월 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
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
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하려는 사용자가 제4조의2제2항

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5. (생략)

<신설>

6. 7. (생략)

② (생략)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사항(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한정한다)

4의2. 5. (현행과 같음)

5의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나 운영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
-----가입자(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연금기금으로 운영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u>퇴직연금제도를</u>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업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하고,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u>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u>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u>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공단이 통합하여 운용한다.</u>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u>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u>-----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u>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u>-----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산운용 등을 위탁하고 있는 계약형 퇴직연금(DB, DC, IRP)에 해당함.

이때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DB형의 경우 사용자, DC·IRP의 경우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사용자로서는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의 수준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유인이 적고, 근로자로서는 제한적인 금융지식, 노후자산에 대한 저조한 인식으로 인해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²⁾¹³⁾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형으로 운영되던 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로운 방법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 제고 및 국민 소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

12)“DC형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소규모 펀드의 난립과 금융지식이 낮은 가입자의 역선택이 수익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기금형 제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분산투자와 전문적인 지배구조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노·사의 입장 및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탁법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연금을 관리함에 따라 노·사중심의 연금관리 및 운용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연금의 사외적립이 회사와 독립된 기금의 형태로 조성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된다는 장점도 있다.”

신성환, 송인욱, 이태호. (2022).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사업자 수익률과 기금수익률 비교. 경영학연구, 51(2), 287-301. 10.17287/kmr.2022.51.2.287

13) 학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필요…저소득근로자 적용 확대해야”, 연합뉴스, 박성진기자, 2025.6.23.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3052100530> 등

인 측면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기금형 DC형을 도입하며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것은 ①퇴직 연금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기구에서의 장기적·집합적·전문적 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의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②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 퇴직연금의 운용관리를 공공기관이 수행 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임.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대표 단 설문조사 결과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 중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¹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나,¹⁵⁾¹⁶⁾ 퇴직금(연금)의 공적연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¹⁷⁾

14)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기업 부담금 중 일부(예: 8.3% 중 3%)를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보험료로 의무적으로 전환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적립금과 운용 수익금을 수급시점(예: 55세 또는 60세)에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15)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①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여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46.4%), ②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 강화(27.1%),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현행 유지(20.3%), ④ 모름(6.1%) 순으로 나타났다.

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2024. 7.),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 p. 224.

17) 다만, 주된 6개 설문조사 과제(①보험료율·소득대체율 ②의무가입상한·수급개시연령 ③사각지대 해소 ④기초연금 ⑤직역연금 ⑥세대 형평성) 외의 부가조사에 해당하고, 타 과제와 달리 별도의 학습 없이 설문이 이루어졌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전제가 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조적 특성 및 퇴직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금형 퇴직연금은 구조적 특성상 적립금 운용 주체와 운용손익의 귀속주체가 상이한데, 이로 인하여 원금 손실 발생시 책임소재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퇴직급여의 성격 측면에서,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및 사회보장적 측면¹⁸⁾¹⁹⁾을 가지는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의 관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주체와 관련하여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19) 2013므2250 판례는 퇴직급여법 제정 이후의 판례로, 퇴직급여법 제정 이전 판례 역시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판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니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회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977판결)” 등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주해Ⅱ」, 노동법실무연구회, 2020, 705쪽 참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고(안 제12조의 4),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12조의5), 고용노동부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안 제12조의6).

그러나 동시에 개정안은 신탁설정계약을 퇴직연금공단과 사용자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퇴직연금공단’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안 제4조의2제1항제2호, 제12조의3, 제12조의7, 제21조의5등), 안 제12조의5제6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바 기금 관리·운용의 주체에 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퇴직연금공단과 사용자의 신탁설정계약을 전제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을 설계하고 있는데, 현행 「신탁법」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있는바²⁰⁾ 「신탁법」상 계약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에도 적립금의 권리자 등에 대한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 「신탁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셋째, 안 제12조의5제2항의 기금 관리·운용 방법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와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데, 국민연금과 다르게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및 사회보장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증권의 대여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민연금법」 제102조는 다음과 같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12조의5의 구조와 동일한바,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과 동일한 형태로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사회보험료로 적립금이 조성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자 개인의 후불임금인 퇴직금에서 유래된바 후불임금적 성격을 가지고, 이에 근로자는 자기 재산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자기결정 권한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용자는 체불 등 법적 책임 부담을 지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위험투자보다는 안전한 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²¹⁾ 이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위험성향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거래까지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등기, 임원, 정관, 이사회 등 특수법인 설립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근로자)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내 재산으로 이를 안전하게 운용하겠다는 선호 형성

▲(사용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립금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인한 부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운용을 선호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도입은 퇴직연금시장 전반의 구조와 이해관계 그리고 노동자 수급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주체인 노사가 주축이 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함.

특히 고용노동부는 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기금운용기관을 퇴직연금공단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역량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영 방법에 대한 노사 등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법적 정합성 제고 및 명확한 권리, 책임 관계 확립을 위하여 퇴직연금 기금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연금공단 설립에 있어 설립登記, 임원, 정관, 이사회 등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 제12조의6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퇴직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로 판단되는바 既설치·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용 등 별도 위원회 설치 없이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역할, 업무, 차별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퇴직연금 정책 영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근로복지공단 내 퇴직연금계획부·운영부를 우선활용 가능하므로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등 퇴직연금공단 신설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공단 계약형 퇴직연금 가입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공단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된 것을 삭제하고 있음.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u>	6. <u>공단</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DC, IRP)를 운영할 수 있어²²⁾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DC형 또는 IRP형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한 중소기업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금운용지시를 전달하는 운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개정안은 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이 법에 다른 공단으로 규정하여, 퇴직연금공단이 DC형 퇴직연금기금을 운영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²³⁾로 기능하므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로 계약형 퇴직연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6조를 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계

22)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3)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약형 퇴직연금제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한(30인 이하)도 없어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공단(개정안에 따를 경우 퇴직연금공단)이 수행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범위가 확장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부칙

가. 개정안 부칙의 주요내용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는 공포한 날부터,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음. 부칙 제2조는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부칙 제3조는 퇴직연금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퇴직급여 관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규정하며,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공단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공단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안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개정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조의 설립준비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행위 규정 자체가 시행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별도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²⁴⁾

24) 준비행위 시기를 별도로 특정해야 하는 경우도 아닌바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은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사업, 중퇴 기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재산·권리·의무를 퇴직연금공단이 승계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7의2²⁵⁾ 관련 자료를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퇴직연금공단에 요청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부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0

25)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다)